

② 개정 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47조(부과·징수) ① (생 략)</p> <p>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, 제115조, 제118조(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및 제122조(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)를 준용한다.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	<p>제147조(부과·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제</u> <u>118조(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</u> <u>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</u> <u>다), 제119조의2 -----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